

대관 계약서

@@@(이하"신청인")과 큐브컨벤션센터 (이하"수임인")는 ###(이하 "대관"이라 칭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신청인"이 ###를 위하여 "수임인"으로부터 공연장을 대관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인"과 "수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내용

공연(행사)명	###
대관 장소	큐브컨벤션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3F)
대관 기간	2026년 12월 31일 (월)
대관 사용 시간	07:00 - 19:00 (12시간)
추가옵션 항목	-

제 3 조 대금지불

대관료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대관료	원
추가옵션료	-
부가세	원
계약금액	원

대관료의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액 중 50%	원		입금 시 대관확정
잔금	원		행사 5일 전까지

3.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인"과 "수임인"의 협의에 의해 이를 확정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한다.

4.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수임인"은 하기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 대관 시작일로부터 60일 전 취소 시 위약금 없음

나. 대관 시작일로부터 45일 전 취소시 전체 대관료의 50%

다. 대관 시작일로부터 30일 전 취소시 전체 대관료의 70%

라. 대관 시작일로부터 15일 전 취소시 전체 대관료의 90%

마. 대관 시작일로부터 0~14일 전 취소시 전체 대관료의 100%

제 4 조 의무 및 책임

"수임인"은 "신청인"에게 수임 받은 서비스 대행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공한 방향과 요구를 기준으로 운영 전 과정을 "수임인"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신청인"이 동의한 견적서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신청인"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위임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수임인"은 "신청인"이 동의한 서비스 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적의 기자재 및 인력을 제공하며, "수임인"은 계약 진행 중 "신청인"의 동행이나, 서비스의 준비, 실행 과정의 확인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대행업무와 관련해 공연장 장비 등 용역 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 및 보수 책임을 갖는다. 다만 계약시 약정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한 보완 및 보수작업의 경우는 "신청인"과 "수임인"의 협의에 의해 "수임인"이 추진하며,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정산한다.

제 5 조 불가항력 및 외부 인프라 장애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정부의 규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외부 공공기관 또는 공급자의 사유로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품질 저하 또는 설비 이상(단, 임대인의 내부 설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본다.

3. 제2항의 사유로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시설 제공, 일정 변경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4. 제2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그 외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

“수임인”이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하여 진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수임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수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신청인”과 “수임인”은 아래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신청인”과 “수임인”이 부도 또는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자신이 파산선고를 신청한 경우

나. 각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후, 3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단, 시정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힌 경우는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

가. 위 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 및 각 서류자료 등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위 2항의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 조 권리 양도 및 위임금지

“수임인”은 계약 기간 동안 “신청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가 없으며, “신청인”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도 본 계약에 대한 “수임인”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다.(위반시 계약 해제 사항으로 인정)

제 8 조 비밀준수 의무

“수임인”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득한 일체의 “신청인”에 관한 영업비밀 또는 기술정보를 계약의 존속 중이나, 계약의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 9 조 유보사항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준해 “신청인”과 “수임인”의 상호 합의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청렴계약 준수

“수임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이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수임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기타사항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수임인”의 서면 합의하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 서명 날인 후 “신청인”과 “수임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수임인)

큐브컨벤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3F

대표이사 이준희 (인)

(신청인)

@@@

대표 (인)